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정세균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원의 보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5배로 변경하는 「국가공무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8. 20. ~ 9. 29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8항 중 “2배”를 “5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시간외근무수당) ① ~ ⑦ (생략)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<u>2배</u>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,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.----- ----- -----.	제15조(시간외근무수당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<u>5배</u>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,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.----- ----- -----.
⑨ (생략)	⑨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99